

◎漁業監視船の活動に関する日本国政府と大韓民国政府との間の交換公文

(略称) 韓国との漁業監視船の活動に関する取極

昭和四十二年十月十八日 ソウルで

昭和四十二年十月十八日 効力発生

昭和四十二年十月二十五日

告示

(外務省告示第三〇号)

目 次

ページ

韓国側書簡	一
(1) 取極附屬書 I、II 及び III の規定の実施	一八九
(2) 前記附屬書の修正	一八九
(3) 前記附屬書の有効期間	一八九
附屬書 I 両国監視船相互間の通信連絡に関する規定	一九〇
附屬書 II 両国の連携巡視に関する規定	一九一
附屬書 III 両国の公務員による観察乗船に関する規定	一九五
日本側書簡	一九八

(漁業監視船の活動に関する大韓民国政府との間の交換公文)

서명자 10/10

1954. 10. 10.

韓國側書

(訳文)

月二十二日に東京で署名された大韓民国と日本国との間の漁業に関する協定に規定された暫定的漁業規制措置の実施に關し両国政府の代表の間で到達した次の了解を大韓民国政府に代わつて確認する光榮を有します。

(1) 両国政府は、それぞれ自国の法令の範囲内で、この書簡に添付する附属書 I、II 及び III の規定を実施する。

(2) 両国政府は、相互の合意により、(1)にいう附属書の規定を隨時修正することができる。

(3) (1)にいう附属書 I、II 及び III のそれぞれの規定は、この了解が効力を生ずる日から三年間効力を存続し、その後は、いずれか一方の国の政府が他方の国の政府に対してその適用を終了させる意思を書面により通告する日から一年間効力を存続する。

本長官は、さらに、この書簡及び前記の了解を日本国政府に代わつて確認される閣下の返簡を閣下の返簡の日付の日に効力を生ずる両国政府間の合意を構成するものとみなすことを提案する光榮を有します。韓国との漁業監視船の活動に関する取極

期書前記  
書取極附屬  
及ひⅢ規定の実  
施前記附屬  
書前記附屬  
書の修正

본인은, 또한, 이 공문 및 위의了解 일본국 정부를 대신하여  
제의하는 경우의 확인을, 제의의 확인일자에 확인을 받는 경우  
에는 양국의 협의를 구상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을 거의 하는 의견을 가지나니,

본인은, 또한, 이 공문 및 위의了解 일본국 정부를 대신하여  
제의하는 경우의 확인을, 제의의 확인일자에 확인을 받는 경우  
에는 양국 정부의 협의를 구상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을 거의 하는 의견을 가지나니,

本長官は、以上を申し進めるに際し、ここに重ねて閣下に向かつて敬意を表します。

一千九百六十六年十月十八日

大韓民國外務部長官 李東元

日本國特命全權大使  
木村四郎七閣下

陝西通志

1 (a) 両国の監視船の無線電信の設備を有している船舶局相互間の通信に使用する周波数は、呼出し及び応答のためには二、〇九一キロサイクルとし、その他の通信のためにはそれぞれの監視船の船舶局の通常の周波数とする。

卷之三

단 한민국과 같은 국가의 어업이 전한 현장에 전한 힘의 의사  
3(a), (b), (d), 6 및 8(c)에 관한, 앞서의 결론 상호간의  
종신연락은 다음 방법에 대해서 양해다.

1. (a) 임국의 군사선의 무전연장의 실비를 가져가고 있는 선박과 함께 그의 흥신에 사용되는 주파수는 표를 봄 응답을 위하여 2,003㎑로 사용되도록 하거, 기타의 응답을 하여는 각국의 군사선의 군사선의 흥상의 주파수로 한다.

(b) (a) にいう船舶局は、その監視船が行動してゐる間、常に  
「一、〇九一キロサイクルを聽守する。

2 一方の国の 1(a) にいう船舶局が呼出符号の不明な他方の国  
の監視船の船舶局を呼び出そうとする場合には、その呼出方  
法は、 C P ( 特定の二局以上あて一般呼出しを表示する符号 )  
の次に X Y ( いずれか一方の国の監視船の船舶局を一括して  
表示する符号 ) を付したものとする。

3 (a) 1(a) にいう船舶局は、相互の直接の通信が困難な場合に  
は、両国のいずれかの海岸局を中継して通信を行なうこと  
ができる。

(b) (a) にいう海岸局は、大韓民国の国立水産振興院無線局  
( H M G ) 及び海洋警察隊本隊無線局 ( H M F ) 並びに日  
本国の第七管区海上保安本部の通信所 ( J N R ) 及び佐世  
保海上保安部の通信所 ( J N K ) とする。これらの海岸局  
は、常時一、〇九一キロサイクルを聽守する。

4 一方の国の監視船の無線電信の設備をしてゐない船舶局  
が他方の国の監視船の船舶局にあてて通信を行なおうとする  
場合には、 1(a) にいう自国の監視船の船舶局又は両国のうち  
の海岸局を中継して通信を行なう。

(c) (a) 에서 말하는 선박국은 그 관서관의 항공기로  
있는 동안, 상시 2,021케로 사이클을 경유한다.

2. 일방국의 1(a)에서 말한 선박국이 호출부호가 불명한 일방국의  
관서관의 선박국을 호출하여는 경우에는 그 호출 방법은, CP(특정)의  
2국 이상에 대한 일반 호출을 표시하는 부호(부호) 다음에 XY(어느 일방국의  
관서관의 선박국을 일반하여 표시하는 부호)를 부린 것으로 한다.

3. (a) 1(a)에서 말하는 선박국은, 상호간의 직접적 통신이  
근린한 경우에는, 양국의 어느 한편의 해안국을 중계하여 통신을 입할  
수 있다.

(b) (a)에서 말하는 해안국은, 대한민국의 국립수산  
진흥원 무선국 (HNC) 및 해양경찰대 본대 무선국 (HMP), 또한  
일본국의 제7관구 해상보안본부의 통신소 (JNR) 및 사세로 해상  
보안부의 통신소 (JNK)로 한다. 이를 해안국은, 상시 2,021케로  
사이클을 경유한다.

4. 일방국의 관서관의 무선전송의 실비를 가지고 있는 선박국이  
아직까지의 관서관의 선박국에 대하여 통신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1(e)에서 말하는 자국의 관서관의 선박국 또는 양국의 어느 한편의

5 両国の監視船相互間の通信は、可能な場合には、旗流信号又は発光信号により行なうことができる。

6 両国の監視船相互間の通信は、原則として、英語又は国際通信書により行なう。

定規による巡視に連携する巡視国

## 附属書II

大韓民国と日本国との間の漁業に関する協定についての合意された議事録<sup>(3)</sup> (b)に関し、両国の監視船（大韓民国については水産庁漁業指導船及び海洋警察隊警備艇を、日本国については水産庁漁業取締り船及び海上保安庁巡視船艇をいう。）が相互に連携して行なう巡視（以下「連携巡視」という。）は、次の方法に従つて行なうものとする。

1. 連携巡視を行なうにあたつては、大韓民国水産庁漁業指導船及び日本国水産庁漁業取締り船各一隻を一組とし、又は大韓民国海洋警察隊警備艇及び日本国海上保安庁巡視船艇各一隻を一組とする。

2. 両国の監視船は、連携巡視を行なうにあたり、原則として相互に視認できる範囲内で行動し、視界が不良なときはやむをえないときは容易に会合できる範囲内で行動する。

5. 미국의 감시선은 그선은, 가능한 경우에는, 기록 신호로 표시할 수 있다.

6. 영어의 문서로 통신하는 경우에도, 영어 또는 주국어로 표시된다.

## 부록 II

이란민국과 일본민국의 어업이 관한 협정에 관한 항의의 서류  
(3)(b)에 관하여, 양국 감시선 (이란민국에 있어서는 수산성 수업  
지도관 및 해양경찰대, 경비정우, 일본국에 있어서는 수산업 사업  
단속관 및 해상 보안청 수사관을 말한다.) 이 상호 협약에 있어  
술시 (이하 “제2부 문서”라 한다.)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첨부한다.  
1. 각국 감시선은 협약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수산업 사업  
지도관 및 해상 보안청 수사관은 협약에 있어서는, 일본  
민국 해양경찰대 경비정우 및 일본국 해상 보안청 수사관은 협약에  
서는 각각 첨부한다.

2. 양국의 감시선은, 각국 감시선은 협약에 있어서, 협약적으로  
서인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협약에 표기된, 서기가 표기한 대로  
되는 경우에만 표기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행동한다.

3. 連携巡視は、年六回以上、主として、暫定的漁業規制措置の対象となつてゐる漁業の盛漁期において行なう。一回の連携巡視の期間は、一週間を基準とする。

4. 一方の国の政府の関係当局は、連携巡視のために使用する自國の監視船の船名、所属、呼出符号、総トン数及び航海能力を記載した一覧表を他方の国の政府の関係当局に通報する。一方の国の政府の関係当局は、前記の一覧表の記載事項に変更を生じたときは、他方の国の政府の関係当局に対して遅滞なく通報する。

5. (a) 一方の国の政府の関係当局は、連携巡視を行なおうとするときは、その連携巡視の開始予定日の原則として三十日前までに、他方の国の政府の関係当局に対して次の事項を明示した文書による要請を行なう。

- (1) 連携巡視を行なおうとする自國の監視船の船名
- (2) 連携巡視予定海域
- (3) 連携巡視予定期間
- (4) 両国の監視船が合流することを希望する日時及び場所
- (5) その他必要な事項

3. 계약 순서는, 연 6 회 이상, 주로, 강정적 어업구 제 조치의 대상이 되었는 어업의 성역에 한한다. 1 회의 계약 순서의 기간은 1 주일을 기준으로 한다.

4. 일방국의 일부의 관계당국은, 계약 순서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국의 관세관의 선명, 소속, 호출부호, 총 톤수 및 항해 속력을 기재한 일련번호를 상반국의 일부의 관계당국에 통보한다. 일방국의 일부의 관계당국은, 상반국의 일련번호의 관계사항에 변경이 있음을 미리 알고, 상반국의 일부의 관계당국에 그 하위 계약을 통보한다.

5. (a) 일방국의 일부의 관계당국은, 계약 순서를 통하여 계약 일정, 동 계약 순서에서 예정인의 원칙적으로 30일전까지, 상반국의 관계당국에 그 하위 다음 사항을 명시한 서면서 요청한다.

- (1) 계약 순서를 통하여 계약하는 자국의 관세관의 선명
- (2) 계약 순서 예정 일정
- (3) 계약 순서 예정 기간

- (4) 상반국의 관세관이 일부하고 계약하는 일정 및 강제
- (5) 기타 필요한 사항

(b) (a) の要請を受けた関係当局は、その要請を受けた日から十五日以内に回答することとし、その要請を受諾することを通報するにあたつては、その連携巡視に従事する自国の監視船の船名を通報する。両国政府の関係当局は、必要と認めるときは、(a) (2) から (5) について協議して調整することができる。

6. 3. 4. 及び 5 の規定にかかわらず、両国の監視船が遭遇したとき又は特に必要と認めるときは、相互に連絡してお互いに限り連携巡視を行なう。

7. 連携巡視を行なうにあたつては、いずれか一方の国の監視船を当番船とする。針路、速力及び間隔等は、当番船が発議し、両国の監視船間の協議により決定する。両国の監視船は、原則として一日交代により、平等に当番船となる。

8. 連携巡視を行なつてゐる一方の国の監視船は、海難救助、緊急避難その他やむをえない理由により、その実施を中止する必要が生じた場合には、他方の国の監視船にその理由と中止の期間を通報した後に、当該連携巡視を中止することがある。

(b) (a)의 요청을 받은 관계당국은,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답하거나 통보하고, 그 요청에 대한 수락을 통보한다. 일어에서는, 그 경우 손서에 종사할 차관, 감시선의 선명을 통보한다. 양국 정부의 관계 당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a) (2) 내지 (5)에 정하여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3. 4. 및 5 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국 감시선이 조우하게 되면 그들은 즉시 멈춰 하다가 인정할 때에는, 상호 연락하여 가능한 한 계획을 짜야 한다.

7. 계획 순서를 정함에 있어야 하는 어느 일방국의 감시선은 당번선으로 한다. 차도, 속도 및 거리등은 당번선에 의하여 정의되고 양국 감시선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양국의 감시선은 일정으로 1일 그 대에 의하여 행동의 단번선이 된다.

8. 계획 순서를 정하고 있는 일방국의 감시선은, 8. 남구조, 경기미남 또는 기타 부득이한 이유에 의하여, 그 일시를 중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국의 감시선에 그 이유와 증거의 기관을 통보한 후에 단체로 계획 순서를 중지할 수 있다.

附屬書Ⅲ

大韓民国と日本国との間の漁業に関する協定についての合意された議事録<sup>3(4)</sup>に關し、一方の國のもっぱら漁業の取締りに從事する監視船（大韓民国については水産庁漁業指導船を、日本国については水産庁漁業取締り船をして、以下「漁業取締り船」とさう。）が暫定的漁業規制措置に關して自國の漁船に対して行なう取締りの実施状況を観察するための他方の國の政府の公務員（以下「観察公務員」とさう。）による当該漁業取締り船への乗船（以下「観察乗船」とさう。）は、次の方法に従つて行なうものとする。

1 観察乗船は、主として、暫定的漁業規制措置の対象となつてゐる漁業の盛漁期に行なう。一回の観察乗船の期間は、十日以内とし、一隻の漁業取締り船に乗船する観察公務員の数は、二名以内とする。

2 一方の國の政府の關係當局は、観察乗船のために使用する自國の漁業取締り船三隻を指定し、かつ、これらの船舶の船名及び総トン数を記載した漁業取締り船一覽表を他方の國の政府の關係當局に通報する。一方の國の政府の關係當局は、前記の一覽表の記載事項に変更を生じたときは、他方の國の政府の關係當局に対して遅滞なく通報する。

韓国との漁業監視船の活動に關する取極

부속서  
III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관한 법의 사속  
3(4)에 관하여, 일본국의 오토지 어업의 단속에 종사하는 관서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수상의 어업지도단을, 일본국에 있어서는  
수상의 어업단속단을 말하며, 이하 "어업 단속단"이라 한다.)이  
장정적 어업자에 조치의 관하여 자국의 예산에 따라 행하는 단속의  
실시 상황을 시찰하기 위한 일본국의 정부의 공무원 (이하 "시찰공무원"  
이하 한다.)에 의한 허가, 어업단속단에의 승선 (이하 "시찰승선"이라  
한다.)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행한다.

1. 시찰승선은, 주로, 장정적 어업 규제조치의 비상이 되는  
어업의 경우에 행한다. 1회의 시찰승선의 기간은 10일 이내로  
하고, 1회의 어업단속단에 승선하는 시찰공무원의 수는 2명이내로  
한다.

2. 일본국의 정부의 관계당국은, 시찰승선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국의 어업단속단 3척을 지정하고, 또한 이를 선박의 신명 및  
총トン수를 기재한 어업단속단 운임표를 일본국의 정부의 관계당국에  
통보한다.

3. (a) 一方の国の政府の関係当局は、他方の国の漁業取締り船への視察乗船を行なおうとするときは、その視察乗船予定期の原則として三十日前までに、他方の国の政府の関係当局に対して次の事項を明示した文書による要請を行なう。

- (1) 視察公務員の官職、氏名、年齢及び所属官署名
  - (2) 視察予定海域
  - (3) 乗船予定日時及び視察乗船予定期間
  - (4) その他必要な事項
- (b) (a) の要請を受けた関係当局は、その要請を受けた日から十日以内に回答することとし、その要請を受諾するなどを通報するにあたつては、次の事項を明示した文書によつて回答を行なう。
- (1) 乗船させる漁業取締り船の船名
  - (2) (1) の漁業取締り船の取締り予定海域
  - (3) 乗船日時及び視察乗船期間
  - (4) その他必要な事項

일방국의 경부의 관계 당국은, 선기 일정표의 기지·사항에 변경이 있음 때에는, 대방국의 경부의 관계 당국에 대하여 차세일이 통보한다.

3. (a) 일방국의 경부의 관계 당국은, 대방국의 어업 단속선에 일정선정하고 계획 대처에, 동 시찰 승선 예정일의 일정으로 30일 전까지, 대방국의 경부의 관계 당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서 요청한다.

#### 문서로써 요청한다.

- (1) 시찰 공무원의 관직, 성명, 연령 및 소속관서명
  - (2) 시찰 예정 해역
  - (3) 승선 예정일시 및 시찰승선 예정기간
  - (4) 기타 필요한 사항
- (b) (a)의 요청을 받은 관계 당국은,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답하기로 하고, 그 요청에 대한 수락을 통보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서 회답한다.
- (1) 승선시키는 어업단속선 선명
  - (2) (1)의 어업단속선의 단속 예정부위
  - (3) 승선일시 및 시찰승선 기간
  - (4) 기타 필요한 사항

(c) 一方の国の政府の関係当局は、他方の国の政府の関係当局の要請に応じ、視察乗船が年六回以上行なわれるよう取り計らう。

4. (a) 大韓民国政府の視察公務員が日本国の大韓民国の漁業取締り船に乗船する港は、博多港とし、日本国政府の視察公務員が大韓民国の漁業取締り船に乗船する港は、釜山港とする。下船する港は、乗船した港とする。

(b) 一方の国の政府の視察公務員は、他方の国の漁業取締り船に乗船するときは、自國の政府が発給する身分証明書を携帯し、かつ、当該漁業取締り船上にある権限ある公務員の要求に応じこれを提示する。

(c) 視察公務員は、その乗船している漁業取締り船の船長が、船員に対する命令、航海安全の確保、船内規律の維持等に関する有している職務及び権限を侵すことはできない。

5 視察公務員は、次のことを含むできる限りの便宜を受ける。

(a) その乗船している漁業取締り船から自國の漁業取締り船に対しても無線通信連絡を行なう便宜

(c) 일본국의 정부의 관계부처는, 아방국의 정부의 관계부처의 요청에 따라, 시찰승선이 연 6회 이상 있어야 기도록 한다.

4. (a) 대한민국 정부의 시찰공무원이 일본국의 어업단속선에 승선하는 항구는 “하카타”항으로 하자. 일본국 정부의 시찰공무원이 “한민국의 어업단속선에 승선하는 항구는 부산항으로 한다. 아간에는 항구는 승선한 항구로 한다.”

(b) 일본국의 정부의 시찰공무원은, 아방국의 어업단속선에 승선할 때에는, 차고 정부의 법규에는 신규증명서를 “내셔널 디비” 어업단속선장에 있는 경관 또는 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만 이를 제시한다.

(c) 시찰공무원은, 그 승선하고 있는 어업단속선의 선장이, 선원의 대한 명령, 항해안전의 확보, 선내의 규율의 유지 등에 관하여 가지는 직무 및 권한을 침범할 수 없다.

5. 시찰공무원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가능한 한의 면으로 범는다.

(a) 그 승선하고 있는 어업단속선으로부터 차고의 어업

## 韓国との漁業監視船の活動に関する取極

一九八

(b) 自国の政府から召喚の命令を受けた場合又は疾病等の事由により視察乗船を継続することが困難となつた場合において、その乗船してゐる漁業取締り船が属する国の法令の範囲内で可能な必要な便宜

6. 視察公務員は、その乗船してゐる漁業取締り船内において、居住区、食事及び衛生等につき適切な待遇を与えられる。

7. 視察公務員は、その視察乗船により要する食費を乗船してゐる漁業取締り船の属する国の給食費支給基準により負担する。

### 簡日本側書

(韓国側書簡)

書簡をもつて啓上いたします。本使は、一千九百六十六年十月十八日付けの閣下の次の書簡を受領したことを確認する光榮を有します。

本使は、さらに、閣下の書簡に述べられた了解を日本國政府に代わつて確認し、かつ、閣下の書簡及びこの返簡をこの返簡の日付の日に効力を生ずる両國政府間の合意を構成するものとみなすことに同意する光榮を有します。

本使は、以上を申し進めるに際し、ここに重ねて閣下に向かつて敬意を表します。

(d) 자국 정부로부터 차출 명령을 받은 경우 그에 따른  
자국정부의 차출로 인하여 시찰승선을 하는 경우에 대한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항입니다.  
그 속에 있는 어떤 단속관의 수사는 국가의 법률에서  
가능한 범위안에

6. 시찰승선부는 그 수사를하고 있는 조업단속선에게 의무를  
수행. 그러나 그 수사는 그 조업단속선에 부과되는 책임을 면제합니다.

7. 시찰승선부는 그 시찰승선에 대해서는 식비를 수령하고  
있어 조업단속선의 차출로 감사의 책임과 같은 경우에 부담합니다.

千九百六十六年十月十八日

日本国特命全権大使 木村四郎七

大韓民国外務部長官 李東元閣下

(参考)

この取極は、韓国との漁業協定に規定された暫定的漁業規制措置の実施に關し、韓国とわが国の漁業監視船間の通信連絡、両国漁業監視船の連携巡視及び公務員の相互视察乗船について定めるものである。